

제22조제1항 전단중 “過怠料에 처한다”를 “刑事處罰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8항의 규정에 의한 同行命 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管轄 地方法院判事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訴訟法 중 拘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통화내역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내역과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9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

부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의 발생여부나”로 하고, “사유를”을 “사유 및 위원회의 의견을”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재심청구 및 추가진정) ① 진정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불능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은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진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과 추가진정의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搜查機關”을 “特別檢事로 하여금 搜查하게 하거나 다른 搜查機關”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委員會가 이 법에 의하여 民主化運動過程에서 違法한 公權力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民主化運動關聯者名

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로 본다.

② 이 법에 의하여 民主化運動 또는 權威主義的統治의 정치·사회적 彈壓過程에서 違法한 公權力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死亡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蓋然性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民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消滅時效의 적용을 排除한다.

③ 委員會는 國家賠償과 관련하여 被陳情人 또는 事件 關聯者の 재산에 대한 保全處分을 할 것을 法務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는 즉시 保全訴訟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條(決定등의通知) 위원회는 第5條의2제2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公소제기,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不能決定,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不能決定, 제24조의3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 및 追加陳情에 대한 決定,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疑問死 事件의 調査를 종료한 후에는”를 “각 疑問死 事件에 대한 眞相糾明이 終了된 때에”로, “대통령에게”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은 2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檢事 또는 檢察官”을 “特別檢事が 아닌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2千萬원”을 “3千萬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8. 제22조 제5항,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7조 본문 중 “1千萬원”을 “3千萬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 중 “同行命 숨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을 “제3자로 하여금 同行命令狀의 執行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宣誓와 證言을 거부한 자.

부 칙

- ①(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지 전에 행한 위원회의 결의 및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각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추가진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 民主化運動 또는 權威主義的 統治하의 政治 · 社會的 騁壓過程에서 발생한 —————— ————— ————— ————— 2 (현행과 같음)
1. “ <u>疑問死</u> ”라 함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한 疑問의 죽음으로서 그 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違法한 公權力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3. “ <u>眞相糾明</u> ”이라 함은 疑問死 事件에 대한 實體的 真實을 糾明하기 위해 필요한 調查 및 搜查活動 일체를 말한다.
2 (생 략) <u>〈신 설〉</u>	제3조(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의 設置) —————— 真相糾明 ————— —————
第3條(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의 設置) 疑問死事件에 대한 調査를 위하여 大統領所屬下에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4條(業務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疑問死 事件에 대한 真相糾明 3. 聽聞會 개최
第4條(業務 등) ①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각號와 같다. 1. (생 략) 2. 疑問死한 者에 대한 調査 <u>〈신 설〉</u>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②委員會는 第1項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관련 機關이나 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 (생 략) ②委員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公認된 大學에서 副教授 이상의 職에 8年 이상 在職한 者	2. —————— 8年 이상 在職한 자로 副教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④ (생 략) <u>〈신 설〉</u>	3. ④.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民主化運動 또는 人權運動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자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⑥ (생 략) <u>〈신 설〉</u>
第5조의2(특별검사의 임명) ①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의2(특별검사의 임명) ①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 2. 위원회에 계류된 사건의 조사를 위한 압수 · 수색 · 검증 · 영장의 신청 및 집행.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상의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④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가정보원·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피견근무와 장비의 제공, 기타 의문사진상규명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특별검사는 이 법에 정한 위원회의 활동 및 공소의 제기와 유지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p>⑦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의한다.</p> <p>⑧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第11條(事務局의 設置) ①~④(생 략) 〈신 설〉	第11條(事務局의 設置) ①~④(생 략) (현행과 같음)
第20條(陳情의 却下) ① 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하여야 한다.	<p>⑤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증인 사건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자와 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 및 軍事法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p>
1.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② 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하여야 한다.	<p>第20條(陳情의 却下) ① ————— 真相糾明————— 1. ————— 真相糾明————— 2. (현행과 같음) ② ————— 真相糾明을————— —————</p>
第21條(調查의 개시) ① 委員會는 陳情이 第20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却下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第21條(眞相糾明의 개시) ① ————— ————— 真相糾明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 委員會는 疑問死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p>
第22條(調査의 방법) ①~④(생 략) 〈신 설〉	第22條(調査의 방법) ①~④(현행과 같음)
⑥ 第3項의 规定에 의하여 實地調查를 하는 委員 또는 職員은 實地調查의 대상인 機關, 施設,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調査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p>⑥ 第1項 또는 第5項의 规定에 의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10條 내지 第112條, 第120條 내지 第131條 및 第133條의 规定을準用한다. 〈후단 신설〉</p>
⑩ 第9項의 同行命令狀에는 대상자의 姓名, 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過怠料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體格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p>⑩ 第8항의 规定에 의한 同行命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管轄地方法院判事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刑事訴訟 法中 拘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신 설〉	제22조의2(통화내역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볼 구하고 관계기관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내역과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2조의3(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9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제23조(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p>제24조의2(진상규명 불능 결정) 민주화운동 또는 권리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의 발생여부니</p> <p>사유 및 위원회의 의견을</p>
제25조(告發 및 搜查依賴) ①위원회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犯罪嫌疑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發인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參謀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p>제25조(告發 및 搜查依賴)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으로 하여금 搜查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생 략)</p>
	<p>第26條(救濟措置 등) 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調査結果 民主化運動過程에서 公權力의 違法한 行사로 死亡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等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에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이 법에 의하여 民主化運動 또는 權威主義的統治하의 정치·사회적 弾壓過程에서 違法한 公權力의 직·간접적인 行사로 死亡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蓋然性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民法 제766조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消滅時效의 적용을 排除한다.</p> <p>③委員會는 國家賠償과 관련하여 被陳情人 또는 事件關聯者の 재산에 대한 保全處分을 할 것을 法務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는 즉시 保全訴訟을 하여야 한다.</p>
	<p>第27條(決定등의 통지) 委員會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葉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30條(보고 등) ①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調査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大統領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真相 등에 관하여는 公表하여야 한다.</p> <p>②·③(생 략)</p>
	<p>第30條(보고 등) ① 각 疑問死 事件에 대한 真相糾明이 종료된 때에 ————— 대통령과 국회에 —————.</p> <p>②·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은 2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第32條(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①委員會는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 소속의 高等檢察廳이나 그 檢察官소속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에 그 當否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②·③(생 략)	第32條(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①—— 特別檢事が 아닌 檢事 또는 檢察官—— —— —— ②·③(현행과 같음)
第34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3.(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第34條(罰則) —————— —— 3千萬원 —————— 1.~3.(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 을 가한 자. 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8.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시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第37條(過怠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정당한 이유없이 第22條第1項第4號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3.·4.(생 략) <u>〈신 설〉</u>	第37條(過怠料) —————— 3千萬원 ——————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3.·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宣誓와 證言을 거부한 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2.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 종 훈

이 법률안은 김원웅의원 등 26인으로부터 2002년 9월 10일 발의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I. 제안이유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내에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의문사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특별 검시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리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로 함(안 제2조제1호).
- 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라.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동 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5항 신설).

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 3 신설)

아.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삭제).

자. 진정인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와 추가진정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 제3 신설)

차.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안 제26조제1항).

카.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III. 검토의견

동 개정안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업무범위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추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위원회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 및 '위원회 조사권한의 강화'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이창복의원 대표발의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위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내용중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및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진상규명'의 정의를 의문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수사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외에 수사활동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는 '수사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의문사 사건의 원인 및 민주화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조사활동'을 위원회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초의 입법취지나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 제25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범죄의 단서를 포착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위원회에 수사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자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중의 하나로서,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등의 일정 자격을 가진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될 때마다 그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별첨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현실 및 관련제도와의 부합여부, 권력분립원칙과의 관계, 기준 검찰수사 고자료의 중복문제, 실질적 효용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대립되어 온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제도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단서에 의하여 소추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특정 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한시적으로 맡기는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될 사건을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여부, ②특별검사의 수사활동 범위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당해 사건에 대한 소추의 가능성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위원회가 조사를 행한 85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특단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②‘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별검사가 담당하게 될 사건 및 수사기간 등이 법률에서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③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기간 동안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이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특검제 도입 여부에 관한 일반적 찬반론

논점별	<찬성론>	<반대론>
한국현실 및 제도에의 부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특히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치적 사건 등의 수사에 대한 보충적 장치 마련을 통해 검찰수사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가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검사가 임명되는 미국의 상황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제도로서 검찰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국의 현실에는 부적합한 제도임
특별검사의 도입 필요성 과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결 -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 등에 대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심리에 의한 정치적 여론재판이 지속될 경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책임있는 국정수행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치적 의혹사건 등에 대하여 정략적 차원에서 특검제를 계속 요구하고 이를 무기로 하여 정치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도 있음
권력분립원칙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권리남용 방지라는 최종목표의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 특검제가 기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부간 견제·균형에 따른 권력분립의 원칙의 훼손 및 특별검사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로 인해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검찰수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사건 등에 관하여는 여야 대다수의 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수사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검찰총장에 의해 수사가 지시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여 특검제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제 수사가 관행화된다면 검찰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원칙이 붕괴되고 국가소추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기존의 형사법체계가 혼들림
특별검사의 부작용 여부 및 통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해임과정 및 수사대상·기소관할권의 범위 지정을 통하여 충분한 권한 통제·감독이 가능함 -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면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사회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검사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 및 이에 따른 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특검제 실시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 도출 미흡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2002. 1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의원 : 2002. 9. 10 김원웅 의원 등 26인

나. 회부일자 : 2002. 9. 11

다. 상정 · 의결일자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2002. 11. 1) 상정 · 소위원회부

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 11. 14) 심사

제14차위원회(2002. 11. 14) 소위원회심사경과보고 · 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내에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종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의문사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

을 밝히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리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 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로 함(안 제2조제1호).
-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3)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4)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 5)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5항 신설).
- 6)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7)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 · 피진정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 · 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3 신설)
- 8)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삭제).
- 9) 진정인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와 추가진정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제3 신설)
- 10)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안 제26조제1항).

11)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임종훈)

동 개정안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업무범위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추가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위원회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 및 '위원회 조사권한의 강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이창복의원 대표발의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동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위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내용 중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및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가.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진상규명'의 정의를 의문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수사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외에 수사활동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그런데, 이처럼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는 '수사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의문사 사건의 원인 및 민주화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조사활동'을 위원회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초의 입법취지나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 제25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범죄의 단서를 포착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위원회에 수사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개정 법률안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중의 하나로서,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등의 일정 자격을 가진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될 때마다 그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별첨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현실 및 관련제도와의 부합여부, 권력분립원칙과의 관계, 기존 검찰수사권과의 중복문제, 실질적 효용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대립되어 온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제도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단서에 의하여 소추기능성이 있는 사건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특정 사건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한시적으로 맡기는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①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될 사건을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여부, ② 특

별검사의 수사활동 범위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당해 사건에 대한 소추의 가능성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①위원회가 조사를 행한 85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특단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②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별검사가 담당하게 될 사건 및 수사기간 등이 법률에서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③위원회가 2년여의 조사기간 동안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이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경과보고의 요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균위원)

동 법안의 주요 내용중 금융거래내역 자료의 제출요구, 청문회 설치 및 허위 증언자에 대한 처벌, 동행명령 불응자에 대한 강제구인, 감청의 요청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법 및 기존 형사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조치중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규정과 조사재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서만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代案)을

제안하기로 참석한 소위원회 위원들간에 합의가 있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2. 9.

발의자 : 이창복 의원

찬성자 : 인

제안이유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2002년 9월 16일로 그 활동기간종료일이 임박하였으나 현재 83건의 조사대상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사건 피진정인들의 조사 불응 내지는 허위진술 및 피진정기관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여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의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하의 정치·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로 함(안 제2조제1항).

- 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5항 신설).
- 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강제구인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6항 신설).
- 마.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7항 신설).
- 바.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삭제).

아. 진정인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와 추가진정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제3 신설)

자.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당연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형사소송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1조제1항).

정에서 발생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를 "8년 이상 在職한 자로 副教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5. 기타 民主化運動 또는 人權運動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자

제22조제5항 후단을 "이 경우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 求를 받은 者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의 후단을

"준용하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소명을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5항 내지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 호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 改正法律案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을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

⑦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9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재심청구 및 추가진정) ① 진정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불능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은 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진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과 추가진정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 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본다.

② 위원회가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條(決定등의 通知) 위원회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契却, 제24조의1의 규정에 의한 調査不能決定,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에 따른 결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 및 第26條의 규정에 의한 救濟措置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을 "의문사 사건마다 진상규명을 종료한 후에는"으로, "대통령에게"를 "대통령과 국회에"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2월 이내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경우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조제목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련시효의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신설한다.

제31조(관련시효의 적용배제 등) ① 위원회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및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사건 관련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즉시 보전소송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문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호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8. 제22조제5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제37조 본문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동행명령의 집행을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한 자"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행한 위원회의 결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전에 기각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_____
1. “ <u>疑問死</u> ”라 함은 <u>民主化運動과 관련한 疑問의 죽음으로서 그 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違法한 公權力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u>	1. —— 民主化運動 또는 權威主義的 統治하의 政治·社會的 彈壓過程에서 발생한 _____ _____.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 (생 략)	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公認된 大學에서 副教授 이상의 職에 8年 이상 在職한 者	2. —— 8年 이상 在職한 자로 副教授 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타 民主化運動 또는 人權運動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자 < 삭제 >
③委員中 3人は 制2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 1人은 第3項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 2年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第22條(調查의 방법) ①~④ (생 략)	第22條(調查의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地調查를 하는 委員 또는 職員은 實地調查의 대상인 機關, 施設,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調查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이 경우 資料 나 物件의 提出要求를 받은 者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_____ _____ 준용하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소명을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⑯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⑯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관찰지방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내지 159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3(재심청구 및 추가진정) ① 진정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불능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은 위원회에서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진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심과 추가진정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u>第26條(救濟措置 등) 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調查結果 民主化運動過程에서 公權力의 違法한 행사로 死亡하였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 등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에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u>	<p><u>第26條(救濟措置 등) ①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고 인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본다.</u></p> <p><u>②위원회가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을 개인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u></p>
<u>第27條(決定 등의 통지) 委員會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p><u>第27條(決定 등의 通知) 위원회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不能决定,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에 따른 결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u>第30條(보고 등) ①委員會는 疑問死 사건의 調査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大統領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真相 등에 관하여는 公表하여야 한다. ②·③(생 략)</u>	<p><u>第30條(보고 등) ① 각 疑問死 사건의 真相糾明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에</u></p> <p><u>②·③(현행과 같음)</u></p>
<u>第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u>	<p><u>제30조의2(조사보고서의 발간) 의한 보고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2월 이내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경우 8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매 1년마다</u></p>
<u>第31條(公訴時效의 정지 등)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調査가開始된 때부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時까지 調査對象 사건과 관련된 公訴時效의 진행은 정지된다.</u>	<p><u>제31조(관련시효의 적용제한 등) ①위원회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및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u></p> <p><u>②(현행과 같음)</u></p>
<u>②(생 략)</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③위원회는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또는 사건 관련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것을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는 즉시 보전소송을 하여야 한다.</u></p>
<u>第34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p><u>第34條(罰則)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u></p>
<u>1.~3. (생 략)</u>	<p><u>1.~3. (현행과 같음)</u></p>
<u>〈신 설〉</u>	<p><u>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u></p>
<u>〈신 설〉</u>	<p><u>5.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u></p>
<u>〈신 설〉</u>	<p><u>6.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 및 감정을 한 자</u></p>
<u>〈신 설〉</u>	<p><u>7.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호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u></p>
<u>〈신 설〉</u>	<p><u>8. 제22조제5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의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u></p>
<u>第37條(過怠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u>	<p><u>第37條(過怠料) 3千萬원</u></p>
<u>1. 생략</u>	<p><u>1.(현행과 같음)</u></p>
<u>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u>	<p><u><삭 제></u></p>
<u>3. 생략</u>	<p><u>3.(현행과 같음)</u></p>
<u>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u>	<p><u>4. 동행명령의 집행을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한 자</u></p>
<u>〈신 설〉</u>	<p><u>5.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자</u></p>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2.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 종 훈

이 법률안은 이창복의원 등 20인으로부터 2002년 9월 7일 발의되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I. 제안이유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2002년 9월 16일로 그 활동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였으나 현재 83건의 조사대상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사건 피진정인들의 조사불응 내지는 허위진술 및 피진정기관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여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의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로 함(안 제2조제1호).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5항 신설).

-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강제구인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6항 신설).
-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7항 신설).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삭제).
- 진정인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와 추가진정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 제3 신설).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당연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형사소송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1조제1항).

III. 검토의견

이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피진정인들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하여 참고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각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정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범죄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2002년 2월 이창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기존 개정안’이라 함)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에서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위헌의 소지 등이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사항중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제23조, 2002년 9월 16일까지)'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제24조의2)'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별첨한 기존 개정안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기존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안 제22조제6항),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안 제23조),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안 제24조의3),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안 제26조제2항)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6항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소명을 위원회가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문사사건 관련서류가 대부분 비밀문서로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의 자료등 제출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자료제출 거부 규정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기존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계기관등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소명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무관한 외교·군사기밀 등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의문사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위원회의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에 관한 사항

이 개정안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3조(조사기간)를 삭제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재개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조사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안의 1차 개정시(2001. 7.) 3회에 한하여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차 개정시(2002. 2.) 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2년 10월 16일이고 모든 조사를 마친 후 1월내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점(동법시행령 제23조)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만료 1월전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조사기간 규정(제23조)의 개정 연혁

- ① 제정법률(2000. 1. 15) : 조사기간 6개월, 1회 3개월 연장 ('01. 10. 20 종료)
- ② 1차개정(2001. 7. 24) : 조사기간 6개월, 3회 각 3개월 연장 ('02. 4. 20 종료)
- ③ 2차개정(2002. 3. 25) : 2002. 9. 16까지 조사 완료

현재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은 2002년 9월 16일로 그 활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총 85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중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19건)과 기각된 사건(33건) 조차 확실한 진상규명이 덜 된 상태라는 지적이 있고, 특히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된 사건(30건)은 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 부족에 따라 의문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사의 재개 및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02. 9. 16)

계/구분	인정	불능	기각	각하	취하
85(건)	19	30	33	2	1

다만,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이미 2차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당초 최장 9개월이었던 것이 총 22개월까지 연장되었고, 동 기간동안 조사대상 의문사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완료되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의문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단순히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조사권한의 강화여부 또는 관련기관의 협조여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안고 있는 위헌성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원회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을 지난 동법 2차개정 때와 같이 조사권한 강화규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3. 진정인의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3은 위원회의 기각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정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인용결정에 대하여도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각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반대로 '인용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이 피진정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참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용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하여는 피진정인 및 이해관계 있는 참고인에 대하여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반론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인용결정된 사건이더라도 진정인이 당해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추가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진정인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항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의문사 사건으로 명백히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의문사일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배상법에 따른 다른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보다 입증책임을 훨씬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과정 등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의문사의 경우 이와 같이 국가배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별도로 완화하여 준다면 일반 국가배상사건 및 민주화

운동 보상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의문사 관련 입증책임을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경감시켜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정책적 측면 및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창복의원 대표발의, 2002. 2.) 검토보고 요약

1. '의문사' 인정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1호는 '의문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외에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경우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의문사의 범위를 '민주화 운동 과정'외에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정치·사회적 탄압'의 개념이 모호하여 의문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뿐만 아니라,

동 법안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본 법에 의하여 의문사로 인정되는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단순히 정치·사회적 탄압으로 희생된 사람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민주화운동관련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통화내역 ·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15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참고인 · 피진정인 등이 사건조사 전후에 허위진술 또는 진술번복을 위한 모의를 힘였는지 여부, 과거에 피진정인이나 참고인간의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위원회 의결만으로 금융거래 내용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법상 개인의 기본권보장 및 영장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위원회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무조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강제구인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16항은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결로써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상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외에 다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통하여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의 출석이행을 담보하여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의 출석요구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은 현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청(통신제한조치)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17항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참고인 ·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통신제한조치) · 출국금지 ·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및 형사법체계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서만 통화내용의 감청이나 압수 ·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위원회의 요청으로 검사의 영장신청 및 법관의 영장발부가 강제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조사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구제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항(동 개정안 제26조제1항)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과정 등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 · 간접적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문사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위를 확보하고 국가기관간의 의견이 상호 모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현행 법체계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해소방안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문사로 인정되는 죽음의 유형중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 · 사회적 탄압의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일반 민주화운동관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여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구속하게 됨에 따른 권한의 침해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 공소시효 · 소멸시효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제2항(동 개정안 제31조제1항)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조사대상 의문사 사건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관련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별법 규정과 공소시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법상의 관련범죄가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해당한다거나 그 동안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의 배제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기존 경제질서 및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2002. 1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의원 : 2002. 9. 7 이창복 의원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02. 9. 9

다. 상정·의결일자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2002. 11. 1) 상정·소위원회부

제5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 11. 14) 심사

제14차위원회(2002. 11. 14) 소위원회심사경과보고·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2002년 9월 16일로 그 활동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였으나 현재 83건의 조사대상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하

고, 나머지 사건들은 사건 피진정인들의 조사불응 내지는 허위진술 및 피진정기관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여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의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 또는 권리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로 함(안 제2조제1호).
-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5항 신설).
- 4)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강제구인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6항 신설).
- 5)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7항 신설).
- 6)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 7)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삭제).
- 8) 진정인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 청구와 추가진정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3 신설).
- 9)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당연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 10)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형사소송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상의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임종훈)

이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피진정인들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하여 참고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각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정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범죄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으로서 2002년 2월 이창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이하 '기존 개정안'이라 함)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에서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의 소지 등이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사항중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제23조, 2002년 9월 16일까지)'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제24조의2)'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중에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별첨한 기존 개정안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기존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안 제22조제6항),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안 제23조),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안 제24조의3),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안 제26조제2항)에 대하여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가.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6항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소명을 위원회가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문사사건 관련서류가 대부분 비밀문서로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의 자료등 제출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자료제출 거부 규정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기존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짐.

그런데, 관계기관등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소명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무관한 외교·군사기밀 등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의문사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 제한규정의 삭제에 관한 사항

이 개정안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3조(조사기간)를 삭제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재개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조사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조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동 법안의 1차 개정시(2001. 7.) 3회에 한하여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차 개정시(2002. 2.) 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2년 10월 16일이고 모든 조사를 마친 후 1월내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점(동법시행령 제23조)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만료 1월전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음.

위원회 조사기간 규정(제23조)의 개정 연혁

- ① 제정법률(2000. 1. 15) : 조사기간 6개월, 1회 3개월 연장 ('01. 10. 20 종료)
- ② 1차개정(2001. 7. 24) : 조사기간 6개월, 3회 각 3개월 연장 ('02. 4. 20 종료)
- ③ 2차개정(2002. 3. 25) : 2002. 9. 16까지 조사 완료

현재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은 2002년 9월 16일로 그 활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총 85건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 중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19건)과 기각된 사건(33건) 조차 확실한 진상규명이 덜 된 상태라는 지적이 있고, 특히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된 사건(30건)은 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 및 조사기간 부족에 따라 의문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사의 재개 및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02. 9. 16)

계/구분	인정	불능	기각	각하	취하
85(건)	19	30	33	2	1

다만,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이미 2차례 결친 법개정을 통하여 당초 최장 9개월이었던 것이 총 22개월까지 연장되었고, 동 기간동안 조사대상 의문사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의문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단순히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조사권한의 강화여부 또는 관련기관의 협조여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안고 있는 위헌성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원회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을 지난 동법 2차개정 때와 같이 조사권한 강화규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겠음.

다. 진정인의 재심청구 및 추가진정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3은 위원회의 기각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정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인용결정에 대하여도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기각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 진정인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반대로 '인용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이 피진정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참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재심청

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인용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하여는 피진정인 및 이해관계 있는 참고인에 대하여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반론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음, 인용결정된 사건이더라도 진정인이 당해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추가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진정인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라.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항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의문사 사건으로 명백히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의문사일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배상법에 따른 다른 국가 배상 사건의 경우보다 입증책임을 훨씬 완화시키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과정 등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의문사의 경우 이와 같이 국가배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별도로 완화하여 준다면 일반 국가배상사건 및 민주화운동 보상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의문사 관련 입증책임을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경감시켜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정책적 측면 및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경과보고의 요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균위원)

동 법안의 주요 내용중 금융거래내역 자료의 제출요구, 청문회 설치 및 허위 증언자에 대한 처벌, 동행령 불응자에 대한 강제구인, 감청의 요청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기존 형사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와 관련된 조치중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규정과 조사재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서만 疑問死真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代案)을 제안하기로 참석한 소위원회 위원들간에 합의가 있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건의서

조사 권한이 강화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서청원 대표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적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실체관계에 접근한 사건들도 있으나, 법적 조사권한과 기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건들이 진상규명되지 못한 채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지난 십 수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오로지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는 일 자체가 저희와 같은 불행한 어버이들이 이 나라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대표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고, 밝은 미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유가족들은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개정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그칠 경우에는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가슴만 숫 덩이처럼 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이 그 현장도 보존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사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밝혀낼 수 없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국가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말 고맙게도 김원웅 의원 등 귀 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하여 조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귀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폐공사 파업유도나, 옷 로비 문제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지금도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의해 그 조사 대상 여부도 가려지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 사건들이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있을 때, 군 의문사 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차디찬 철문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 의문사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향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개정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의문사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모든 사건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으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대표님.

이번 정기국회 이른 시일 내에 대표님과 귀 당의 노력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대표님과 귀 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0. 7.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허영춘 배상

건의서

조사 권한이 강화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희창 후보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적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실체관계에 접근한 사건들도 있으나, 법적 조사권한과 기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건들이 진상규명 되지 못한 채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지난 십 수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오로지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는 일 자체가 저희와 같은 불행한 어버이들이 이 나라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후보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고, 밝은 미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유가족들은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개정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그칠 경우에는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가슴만 숨 덩이처럼 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이 그 현장도 보존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사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밝혀낼 수 없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국가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말 고맙게도 김원웅 의원 등 귀 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하여 조사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귀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폐공사 파업유도나, 옷 로비 문제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지금도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후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의해 그 조사 대상 여부도 가려지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 사건들이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있을 때, 군 의문사 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차디찬 철문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 의문사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향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개정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의문사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모든 사건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으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후보님.

이번 정기국회 이른 시일 내에 후보님과 귀 당의 노력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후보님과 귀 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0. 7.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허영춘 배상

건의서

조사 권한이 강화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한화갑 대표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적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실체관계에 접근한 사건들도 있으나, 법적 조사권한과 기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건들이 진상규명되지 못한 채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지난 십 수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오로지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는 활동 자체가 저희와 같은 불행한 어버이들이 이 나라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고, 밝은 미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유가족들은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개정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그칠 경우에는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가슴만 숫 덩이처럼 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다 이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은 그 현장도 보존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사망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낼 수 없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국가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말 고맙게도 이창복 의원 등 귀 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위원중 1인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귀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나 특별검사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폐공사 파업유도나, 옷 로비 문제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지금도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특검제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 질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의해 그 조사 대상 여부도 가려지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 사건들이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있을 때, 군 의문사 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차디찬 철문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 의문사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향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개정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의문사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모든 사건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으며, 헌법에도 보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님.

이번 정기국회 이른 시일 내에 대표님과 귀 당의 노력에 의해,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대표님과 귀 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0. 8.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허영춘 배상

청원서

조사 권한이 강화되고 모든 의문사 사건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국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함석재 위원장님과 법사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적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몇몇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실체관계에 접근한 사건들도 있으나, 법적 조사권한과 기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건들이 진상규명되지 못한 채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지난 십 수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오로지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는 활동 자체가 저희와 같은 불행한 어버이들이 이 나라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함석재 위원장님과 법사위 위원님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루고, 밝은 미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하오니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 -

■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과거 의문사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였더라면 지금껏 의문사로 남지 않았을 터이고,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나 그에 따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더욱이 당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십 수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되어 진상규명을 이루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면 이 점을 감안하여서라도 권한이 더욱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검찰이 수사권 독립 운운하며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조사 권한은 강화되지 않은 채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거부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간 연장만으로 그칠 경우에는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하는 기간 내내 유가족들의 가슴만 숫 덩이처럼 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원회에서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이었고, 진상규명되지 못한 사건들 대부분이 조사 기간의 부족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사 권한이 미흡하여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다 이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은 그 현장도 보존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워낙 오랜 세월이 흘러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사망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낼 수 없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국가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위원 중 1인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민주당 이창복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조폐공사 파업유도나, 옷 로비 문제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특검제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뿐 아니라 일반 군 의문사 등 공권력에 희생된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에 의해 그 조사 대상 여부도 가려지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 사건들이 위원회에서 조사되고 있을 때, 군 의문사 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차디찬 철문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 의문사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도, 해결 방향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법 개정 때, 민주화운동 관련성 의문사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모든 사건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으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함석재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님들.

이번 정기국회 이른 시일 내에 법사위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0. 8.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혀 영 춘 배상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代案)

발의연월일 : 2002. 11.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2. 26)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는 2002년 9월 7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5차(10월 31일,

11월 5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14일)에 걸쳐 동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2. 11. 14)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참석한 소위원회 위원들간에 제기됨.

다.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4)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 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 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02년 9월 16일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기각결정된 사건중 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합치된 의결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한 사건 및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조사를 재개함으로써 실체

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 改正法律案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후단중 “한다.”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15항 및 제16항).

다. 기존에 기각결정된 사건중 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이 조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한 사건 및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하는 조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⑰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의 기간등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가 재개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
2. 기각결정된 사건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 합치로 의결한 사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 재개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調査의 방법) ①~④ (생 략)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地調查를 하는 委員 또는 職員은 實地調查 대상인 機關, 施設,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나 물건의 제출 요구는 調査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10條 내지 第112條, 第129條 내지 第131條 및 第133條의 規定을準用한다. ⑦ ~ ⑭ (생 략) <u><신 설></u>	제22조(調査의 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_____ _____한 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_____ _____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 ⑭ (현행과 같음) ⑮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⑯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5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 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한다.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

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인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인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진정인의 적격 등) ①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 (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0조 (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진정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
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
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
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⑦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
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
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
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
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⑮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신 사
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 12. 5>

⑯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2. 12. 5>

제23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3. 25)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의2 (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25)

제25조 (고발 및 수사의뢰)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제26조 (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정등의 통지) 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무원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위원·증인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보고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③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2 (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보고 후 5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중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신설 2001. 7. 24>

제33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5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37조의2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위원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6170호, 2000. 1. 15>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96호, 2001. 7.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0호, 2002.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조사기간이 만료된 사건으로서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건은 조사중인 사건으로 보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750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의 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건을 조사한다.

이 경우 기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가 재개된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결정된 사건
2. 기각결정된 사건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이 법 시행 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 재개의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정 및 접수 현황

[2003년 4월 24일 현재]

1. 진정 사건 유형별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2건	3건	6건	7건	1건	89건
경	8건	1건	1건	2건	1건	13건

※ 기타(통계에 넣지 않은 진정 사건) : 공익근무요원 투신자살 1건, 동원예비군 변사 1건.

2. 접수 사건 유형별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9건	7건	8건	10건	3건	107건
경	9건	1건	1건	2건	1건	14건

3. 진정 사건 사고 발생 시기별 통계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군	1건	3건	11건	31건	43건	89건
경	0건	0건	0건	4건	9건	13건

4. 진정 사건 최근 5년간 통계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대	2002년대	계
군	11건	10건	8건	13건	19건	61건
경	2건	2건	0건	2건	5건	11건

5. 진정 사건 중 자살처리 유형

- 1) 총기자살 : 35건(44%)
- 2) 의사 : 19건(24%)
- 3) 추락사 : 14건(17%)
- 4) 기타(수류탄자폭, 동맥절단, 익사, 질식사, 가스중독) : 12건(15%)